

- 1995년 이 교육서비스 지원의 수혜자들은 837명으로 총 비용은 연 120만 명으로 학생 1명당 평균 1,534 페소가 지급되었다. 만약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대학교의 학생의 경우 등록금과 수업료가 면제되었다. 이 자금은 교육부의 고등교육을 위한 발전기금과 장학금에 의해 지불될 것이다. 한편 국가지원 없는 대학의 학생에 대한 등록금과 학비 지원은 대통령장학프로그램에 의해 지불되는 것으로 했다.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35살까지 특별교육지원금을 제공받았다..

- 기타 보상으로 실종자와 사망자의 자녀들에 대한 의무적인 군대서비스의 면제와 정치적 이유로 직장을 상실을 사람들은 그들의 퇴직연금이 회복되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에 망명했다 귀국한 사람들은 입국세가 면제되었다.

(4) 추모사업을 통한 명예회복

□ 법에 의해 제공된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상징적 처방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특히 아일린 대통령은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 아일린은 군대에게 인권침해 행위에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기념 추모비 또는 공원조성이 있다.

5) 칠레의 보상화합조치 평가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와 '보상과 화해를 위한 국가법인'의 활동으로 인권침해사건에 진상조사와 보상조치가 취해졌다. 칠레의 진실위원회의 직무는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구금자의 실종사례, 죽음으로 이른 처형과 고문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되었다.

□ 이러한 이유로 고통 속에서 생존하는 개인적 고문 희생자들은 진실위원회의 보고서에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들은 국가테러 희생자에 대한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더구나 칠레의 사면법은 고문피해 생존자들이 국가에 대한 시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법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법적 의미의 성공적 집행으로 보여진다.

4. 결론에 대신하여 : 우리에게 주는 함의

1) 진상규명과 정의실현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

□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민주화 이후 의문사문제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창설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에 따라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경제적 보상, 추모사업을 통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험은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그것에 기초한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이 동반되지 않으면 화해를 위해 취해지는 보상조치의 성과는 쉽게 획득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보상을 추진하는 기관의 일원화

□ 아르헨티나의 경우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 하나의 기관에 의해 총괄되지 않고 여러 기관들에 의해 추진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록이 미비하여 혼선을 더욱 확대시켰다.

3) 보상을 둘러싼 인권단체와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

□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조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을 통해 화합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보상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상기준, 보상방법 등에 대해 그 핵심 대상자인 유가족, 인권단체들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4)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추모사업을 통한 명예회복의 중요성

□ 의문사 피해로 인해 유가족들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상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에 미흡하다. 보상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추모사업은 불의에 맞섰던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더불어 추모사업을 통해 향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추모사업의 방법으로는 추모비 건립, 추모공원 조성, 그들의 희생과 관련된 건물 보존 등이 있다.

5)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지원

□ 연금형태의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지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부모들을 희생당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서비스 지원은 유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경감 효과뿐만 아니라 부모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재성, “인권의 시각으로 본 칠레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9집, 1998
- 김귀정, “칠레의 민주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 석사논문, 1996
- 양동훈,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청산문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비교”, 『라틴아메리카연구』 제9권 1호, 1996
- 이국운, “아르헨티나 인권재판의 전개과정”. 『법과사회』, 제12호, 1995
- 이국운, “민주화와 사면, 남미 4개국의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법학연구』 제4호, 1997
- 이영조, “아르헨티나의 민선정부와 군부”, 서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4, 1993
- Argentina: The Long Road to Truth,
<http://www.web.amnesty.org/ai.nsf/print:AMR130021998?OpenDocument>
- CONADEP(1984), Nunca Más,
<http://www.desaparecidos.org/arg/conadep/nuncamas/indice.html>
- Edelstein, Jayni(1994), Rights,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Some comparative notes, Seminar No. 6. <http://www.wits.ac.za/csvr/papers/papedel.htm>
- Ensalaco, Mark(1995), Military prerogatives and the stalemate of Chilean civil-military relations. *Armed Forces & Society*, Vol. 21 Issue 2.
- Hunter, Negotiating Civic-Military Relations in Post-Authoritarian Argentina and Chile, *Inter american Quarterly*, 42, 1998.
- Izaguirre, Ines(1998), Recapturing the memory of politic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31 Issue 6.
- Lois, Graciela & Lacabe, Margarita, Search of Vindication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Argentina, <http://www.derechos.org/koaga/vii/lois.html>
- Loveman, Brian(1991), Mision Cumplida? Civil Military Relations And The Chilean Political Transition,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 World Affairs*, Vol. 33 Issue 3.
- Malamud-Goti, Jaime(1991), Punishment And A Rights-Based Democracy, *Criminal Justice*

Ethics, Vol. 10 Issue 2.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ort(Rettig Report),

<http://www.derechoschile.com/basicos/ddhhchile/rettig/english/rettigengindex1.html>

Valente, Marcela, Argentina: Belated Reparations for Victims of the Dictatorship, World News, <http://www.oneworld.org/ips2/feb/argentina.html>

Windhausen, Rodolfo A.(1995), Argentina's 'disappeared': A painful chapter reopens, Christian Science Monitor, Vol. 87 Issue 114.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의
인권침해 보상정책

- 작성자 : 김 영 수(공공연맹 정책부장, 정치학 박사)

- 내용목차 -

1. 서론

2. 남아공의 인권침해 보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

- 1) 개인적 수준의 화해에 머무르는 경향
- 2) 사회체제의 혁명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
- 3) 보상정책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향

3. 남아공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보상정책

- 1) 보상정책의 기초
- 2) 보상정책의 근거와 원칙
 - (1) 개혁과 발전 중심의 원칙(development-centred)
 - (2) 단순성·효율성·공정성 중심의 원칙(simple, efficient and fair)
 - (3) 친화적 문화 중심의 원칙(culturally appropriate)
 - (4) 공동체 중심의 원칙(community-based)
 - (5) 능력개발 중심의 원칙(capacity development)
 - (6) 치료와 화해 중심의 원칙(promoting healing and reconciliation)
- 3) 공동체 가치를 반영하는 인종화해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보상정책

- (1) 국가폭력 발생 당시 상황으로 복구하는 차원의 보상정책(restitution)
- (2) 개인 및 관련자들에 대한 물질적 차원의 보상정책(compensation)
- (3) 법·의학적·심리적으로 복권시키는 차원의 보상정책(rehabilitation)
- (4) 국가폭력의 인정과 예방 차원의 보상정책(satisfaction and guarantees)

4. 결론

남아공 진실과화해위원회(TRC)의 인권침해 보상정책

1. 서론

□ 남아공에서는 거의 300여 년 동안 국가기관에 의한 야만스러운 인권침해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보안군, 남아공방위군, 경찰 등은 흑인과 무력을 앞세워 흑인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파괴하여 흑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였고, 흑인 저항운동의 활동가들을 비밀리에 죽이거나 고문을 행해왔다.

□ 1990년 백인 지배세력과 흑인 저항운동 세력간의 합의로 인종차별주의 체제가 폐지되고, 1994년에 남아공 사회의 민주적 변화를 지향하는 아프리카민족회의(이하 ANC) 정부가 수립되었다. “합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의제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국가통일을 위해 과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면이 문제였다.”¹⁾ 진실과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이하 TRC)는 남아공의 인종간의 화해, 사회통합,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이중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이었다.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사면정책을 통해 이행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흑인들에게 사회경제적 권리의 영역을 확장하여 민주화 이행의 토대를 강화시키는 것이다.²⁾

1 Graeme Simpson, 'Rebuilding Fractured Societies: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the changing nature of violence—Some self-critical insights from post-apartheid South Africa', Paper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00(<http://www.wits.ac.za/csvr/papers/papundp.htm>)

2 John S. Saul, "Cry for the Beloved Country: The Post-Apartheid Development", Monthly Review, vol 52. no 8, January 2001, pp 4-9, 48.

□ 남아공에서는 ‘국민통일 및 화해 촉진법(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Act)’이 1995년 7월 25일에 제정되었고, 1995년 11월 성공회 대주교 투투(Desmond Tutu)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어서 17인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TRC가 만들어졌다.³⁾ 그리고 위원회는 1960년 3월 1일에서 1994년 5월 10일 사이에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평가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정책을 권고하는 중간 보고서를 1998년에 제출하였다.

□ 아직까지 위원회의, 사면위원회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어서 2002년 현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중간 보고서에서 권고한 보상정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ANC정부는 중간 보고서에서 권고된 보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집행하려 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 역시 중간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 남아공의 TRC가 중간 보고서에서 권고한 보상정책의 내용은 앞으로 과거청산을 이루어야 하는 많은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과거청산정책에 있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대표적인 경우가 남아공의 인권침해 보상정책이다.

3 TRC, Introduct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http://www.truth.org.za>)

2. 남아공의 인권침해 보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

□ “대부분의 국가에서 TRC와 같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이행의 시기에 설립된다.”⁴⁾ 남아공의 TRC도 “인종차별적 억압체제를 인종평등적 민주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⁵⁾ 남아공의 TRC도 민주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정치적 화해모델로서 화해와 사회통합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국가폭력 및 인종차별적 착취체제에서 받았던 흑인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TRC의 활동 및 TRC가 제안한 다양한 보상정책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의 복잡한 측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⁶⁾

□ 그래서 TRC의 활동 및 TRC가 권고한 보상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인적 화해와 국가적 화해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이고, 그 화해간의 차이는 무엇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혹은 남아공 사회체제의 발전적 상과 TRC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⁷⁾

□ 문제는 화해에 대한 인식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의 상에 대해 각 세력들이 상이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회분열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 조사 보고서의 예를 들면, 개인적 수

4 Jochen Neumann, 'Reconcili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Conflicts: The Reconciliation and Reconstruction Programme of the Quaker peace centre', may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neum.htm>)

5 Graeme Simpson, 'Rebuilding Fractured Societies: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the changing nature of violence-Some self-critical insights from post-apartheid South Africa'. Paper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00(<http://www.wits.ac.za/csvr/papers/papundp.htm>)

6 Jochen Neumann, 'Reconcili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Conflicts: The Reconciliation and Reconstruction Programme of the Quaker peace centre', may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neum.htm>)

7 Undine Kayser, 'Interventions after the TRC: Reconciliation, Advocacy & Healing', CSVN Workshop Report, 25th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ays3.htm>)

준에서의 화해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화해보다 어렵고 복잡하거나 비합리적이다. 남아공의 흑인들은 위원회의 활동 결과, 인종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는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47% 정도가 TRC가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단지 17%만이 용서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이다.⁸⁾ 이와 같이 인권침해 보상정책이나 사회체제의 변화를 둘러싼 각 그룹의 태도와 주장은 상이하게 표출되고 있다.

1) 개인적 수준의 화해에 머무르는 경향

□ 반ANC투쟁그룹은 ANC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ANC정권은 실질적인 반아파르타이드 운동을 약화시키는 소부르주아 정권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이들 그룹은 ANC 정권의 인권침해 보상정책을 구정권의 엘리트와 신정권의 엘리트간의 협작정치이자 아주 훌륭하고도 큰 정치적 사건(event)이었다고 간주한다. “ANC 정권은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을 면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용서와 화해만을 추구하는 정책이다.”⁹⁾ “TRC는 아주 사악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화해정책에 불과하다.”¹⁰⁾ TRC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의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 개개인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 근거로 제출하는 것은 “법은 공동체 보상이나 상징적 보상보다는 개인적 보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¹⁾는 것이다. 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개인적 보상 이외에 사회구조의 개혁과 관련된 보상정책을 TRC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한다.

8 Priscilla B. Hayner. "An Eye to the Future -Reconciliation and Reforms-", Unspeakable Truths. Rout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pp 155-161.

9 Undine Kayser, "CSVW Workshop Report: On Reparation and Repair", 25th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ays3.htm>)

10 Brandon Hamber, 'Reflec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 Reconciliation and Socio-economic Change in South Africa', Medico International Interview, 16 June 1998(<http://www.wits.ac.za/csvr/articles/artcver.htm>)

11 Simon Kimani, 'Report of The National Strategy on Reparations', Workshop held at the Parktonian Hotel, Johannesburg. 31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im1.htm>)

□ 개인적인 물질적 보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TRC의 보상정책 권고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흑인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다. 노동자·민중들은 단순히 돈과 빵만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중장기적인 발전 프로그램의 가치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되기를 원한다.”¹²⁾

2) 사회체제의 혁명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

□ 사회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투쟁그룹은 남아공노동조합회의(이하 COSATU)와 남아공공산당(이하 SACP) 내부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들 세력들은 “지난 시기 ANC정권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민주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¹³⁾ 그래서 ANC정권의 한계, 즉 백인 중심의 사회경제적 권력의 토대와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진보세력이 실질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ANC정권을 강화시켜 사회구조의 변혁적 토대를 구축하려 한다. “백인 정권하에서의 희생자들은 단지 인권침해의 희생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공 사회구조의 구조적 희생자로 간주하여야 한다. 사회구조가 인종적으로 불균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¹⁴⁾

□ 이들 그룹은 “1994년에 ANC-CODATU-SACP가 합의한 남아공의 국가발전강령(이하 RDP)의 실현과 인권침해 보상정책간의 상관관계를 중요시한다. RDP는 인권침해, 성평등,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듯이, TRC가 권고한 보상의 내용은 사회구조의 변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¹⁵⁾

12 Undine Kayser, "CSVR Workshop Report: On Reparation and Repair", 25th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ays3.htm>)

13 COSATU, "Political Discussion Paper", July 2001(<http://www.cosatu.org.za/docs/cecpol.html>), 2001.9.5.

14 Brandon Hamber, 'Reflec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 Reconciliation and Socio-economic Change in South Africa', Medico International Interview, 16 June 1998(<http://www.wits.ac.za/csvr/articles/artcrver.htm>)

□ 인권침해 보상정책도 민족민주혁명의 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즉 인권침해 보상정책은 민족민주혁명의 주요한 과제인 남아공 사회의 사회적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흑인 노동자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욕구는 비물질적 욕구와 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즉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데 화해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욕구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¹⁶⁾

3) 보상정책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향

□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대세로 인정하고 그것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TINA그룹(There is no alternative, 이하 TINA그룹)은 ANC정권에 대해 백인의 이해를 반영하는 민영화 정책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전제로 하는 사회통합적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 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남아공의 경제발전을 전제로 보상정책의 추진을 주장한다. TRC가 권고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보상정책의 내용은 그저 권고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인들이 요구하는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Brandon Hamber, 'Reflec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 Reconciliation and Socio-economic Change in South Africa', Medico International Interview, 16 June 1998(<http://www.wits.ac.za/csvr/articles/artrever.htm>)

16 Undine Kayser, "CSVr Workshop Report: On Reparation and Repair", 25th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ays3.htm>)

□ 보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백인들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민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확보에 주력하지만, 인종간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TRC의 보상정책과는 상반된다. 개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지라도,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로 흑인들의 실업을 증가시키고 흑인 공동체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3. 남아공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보상정책(reparation policy)

1) 보상정책의 기초

□ 희생자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국가 공무원이나 법률에 의한 권력남용과 폭력으로 경제적 손실, 육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 물질적 불평등 등의 침해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¹⁷⁾ 따라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희생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후손들에게 재산의 반환, 상처와 고통의 치유, 그리고 공동체의 시설과 사회 인프라 등의 재건과 복구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¹⁸⁾

□ 왜냐하면 남아공 사회는 여전히 공동체 가치(common value)의 부재로 말미암아 불신, 불평등, 무인내, 부정부패 등의 현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종주의는 건 강한 사회적 단결을 저해하는 유일한 힘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높은 실업율, 생활의 질의 지속적인 악화, 기초 생활서비스 욕구의 미충족 등이 화해를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인데, 그것은 공동체 가치(common value)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¹⁹⁾

□ 보고서에서도 공동체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의 보상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보상되어야 한다. ① 가능하다면 폭력이 발생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하는 차원의 보상정책(restitution), ②개인 및 관련자들에게 물질적으로

17 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34(November 29, 1985) Neil J. Kritz(ed), "Transitional Justice", vol 3,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5, pp. 4-5.

18 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34(November 29, 1985) Neil J. Kritz(ed), "Transitional Justice", vol 3,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5, pp. 4-5.

19 Meverett Koetz, 'The Responsibility of Civil Society: Priorities, strategies, and concerns for reconciliation in South Africa'(http://www/wits.ac.za/csvr/papers/papkoetz.htm)

보상하는 경제적 차원의 보상정책(compensation), ③ 법적·의학적·심리적인 차원에서 복원시키는 차원의 보상정책(rehabilitation), ④ 폭력의 인정과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 차원의 보상정책(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와 같은 특별기구를 통해서 배상(reparation)해야 한다.”²⁰⁾

□ 이러한 보상정책은 남아공 사회의 평화구조 정착, 사회경제적 차원의 인종통합적이고 국가통합적인 사회발전, 그리고 진실의 규명을 통한 화해의 지향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보상정책의 첫째 기조는 더 이상 구조적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공동체의 제반 법이나 제도 등에 평화적 구조들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평화적 구조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폭력감소 ②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역시설의 마련 ③동의를 통한 결정으로 상담문화의 형성 ④논의 테이블에서 해결할 수 있는 관념(notion)의 증대 ⑤가치공유의 조직화 등이다.²¹⁾

□ 둘째 기조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인종통합적이고 국가통합적인 사회발전이다. “이 법은 투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인종간·종족간·계급간의 분할이 심화된 사회를 고통과 부정의가 폭로되는 사회로, 인권이 인정되는 미래의 사회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그리고 남아공인들에게 차별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민주적 평등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적 징검다리이다.”²²⁾ 즉 “남아공 국민들이 잘 살고, 인종간의 화해를 인정하는 평화를 위해 국가통합이 추구되는 것이다.”²³⁾

20 Simon Kimani, 'Report of The National Strategy on Reparations', Workshop held at the Parktonian Hotel, Johannesburg, 31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im1.htm>)

21 Meverett Koetz, 'The Responsibility of Civil Society: Priorities, strategies, and concerns for reconciliation in South Africa'(<http://www.wits.ac.za/csvr/papers/papkoetz.htm>)

22 TRC, Section from the Interim Constitution which deals with the creat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truth.org.za/legal/interim.htm>)

23 Republic of South Africa, 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Act, 1995. 7.26. (<http://www.polity.org.za/1995/act95-034>)

그래서 TRC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개발을 통해 남아공 흑인들을 경제개발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가난과 불평등을 제거한다.”²⁴⁾는 것을 주요 기조로 설정하였다.

□ 셋째 기조는 완전한 진실의 규명을 통한 화해의 지향이다. 위원회가 진실만을 밝히는데 주력하여 인종간의 사회적 화해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두 가지 차원에서 화해의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실이 반드시 화해로 발전하지 못하더라도 진실이 없으면 진정한 화해, 항구적인 화해가 있을 수 없다. 둘째, 제한된 기한과 재원을 가진 위원회가 수십 년 동안 억압과 갈등, 뿌리깊은 분열의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 자력으로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가적 화해를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TRC는 인종차별주의 체제에서 형성되었던 불평등을 복구하는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실현하려 하였다.”²⁵⁾

2) 보상정책의 근거와 원칙

□ 보상의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보상정책이라 할지라도 현 정부가 보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둘째로는 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할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는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인종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권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그와 같은 인권문화가 실현되기 위해 수많은 정책적 권고

24 TRC, "Summary Report", 13, May 1998(<http://www.polity.org.za/govdocs/reports/poverty.html>)

25 Graeme Simpson, 'Rebuilding Fractured Societies: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the changing nature of violence-Some self-critical insights from post-apartheid South Africa', Paper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00(<http://www.wits.ac.za/csvr/papers/papundp.htm>)

안을 제시하고, 또한 그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

□ 위원회는 권고안 제출의 원칙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치료와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 개혁과 발전 중심의 원칙(development-centred)

□ 이 원칙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혹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혜적 자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2) 단순성 · 효율성 · 공정성 중심의 원칙(simple, efficient and fair)

□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혜적 자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왜냐하면 문맹율이 높은 남아공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해를 본 흑인들이 매우 쉽게 TRC의 활동과 보상정책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친화적 문화 중심의 원칙(culturally appropriate)

□ 보상 권고안의 결과로 제출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들이 공동체의 종교적, 문화적 수혜와 실천으로 다가가야 한다. 남아공 사회의 특성상 종족이나 인종 중심의 문화적 · 종교적 정체성에 기반하는 생활공동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4) 공동체 중심의 원칙(community-based)

□ 공동체에 기반하는 서비스와 분배는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록 해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폭력이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기도 하였지만, 흑인과 백인간의 생활 공동체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5) 능력개발 중심의 원칙(capacity development)

□ 공동체의 자원은 서비스의 분배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의 능력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흑인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자원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즉 공동체나 흑인 스스로 자구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치료와 화해 중심의 원칙(promoting healing and reconciliation)

□ 권고안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자들을 긴급하게 치료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간의 이해와 화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다양한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화해가 촉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공동체 가치를 반영하는 인종화해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보상정책

□ 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인종차별주의가 폐지되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체제가 형성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사회 속에 아직도 존재하는 많은 불화와 분열의 밑바닥에는 인종차별주의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기관들이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 사회경제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북돋아 주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

□ 사회경제적 재건과 발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증식시킬 것이다. 첫째, 사회경제적 재건과 발전의 과정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나머지 이슈들이 제기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갈등의 형태를 소유하게 된다. 셋째, 사회적 갈등의 형태를 변화시킬 것이다. 넷째, 본질적으로 과거의 불평등을 해소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민주적 제도들을 정착시켜 왔던 것처럼 실질적인 이행의 동력으로 작용한다.²⁶⁾

(1) 국가폭력 발생 당시 상황으로 복구하는 차원의 보상정책(restitution)

① 공동체 원상회복(community rehabilitation) 프로그램

- 위원회는 공동체 수준과 전국적 수준에서 집행되어야 할 보상정책을 동시에 제안하고 있다. 이 보상 프로그램은 개인과 공동체의 치료와 회복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공동체가 인권침해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던 점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이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를 경우, 인권침해가 공동체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인권침해의 과정에서 젊은이들은 정치적 변혁운동의 활동가로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집을 떠나야만 했던 그들은 교육 및 노동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고등학교, 대학, 기술전문학교, 스포츠센터 등이 이 프로그램의 분배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젊은이

26 Graeme Simpson, 'reconstruction and reconciliation: Emerging and transition', "development in Practice", vol. 7, pp 475-478, 1997([http://www.wits.ac.za/csvr/paper\\$rgs.htm](http://www.wits.ac.za/csvr/paper$rgs.htm))

들이 공동체에서 다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② 교육

- 공동체 대학과 청소년 센터의 건립은 젊은이들이 그들 공동체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 청소년기본교육프로그램은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했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의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 학교의 건립과 개선, 즉 파괴된 학교가 재건되어야 하고 또한 흑인 청소년들의 교육조건들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 특별교육지원서비스, 즉 이 교육 프로그램은 재치료(remedial)와 정서적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 교육기관들은 배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기술훈련과정을 배치하고, 흑인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흑인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③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복구

- 흑인들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흑인 공동체 생활은 파괴되어, 흑인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1994년 당시에 RDP의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지만, 흑인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430만 채의 주택이 필요했었고, 300만 가구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상황

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었다. 이 외에도 1,200만 명 정도의 흑인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²⁷⁾

④ 복귀와 재활

- 희생자들과 가해자들이 동시에 치료를 받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희생자들에게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보상·치유하고, 가해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 가해자들로 하여금 기부금을 내게 하거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술들을 흑인들에게 제공한다.
- 밀고자로 협조자로 비난받아 결과적으로 삶이 파괴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 준다.

(2) 개인 및 관련자들에 대한 물질적 차원의 보상정책(compensation)

□ 가장 어려운 정책이 경제적 보상정책이다. 보상규모 및 보상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개별적인 조건의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²⁸⁾

□ 경제적 보상의 내용

- 개인적인 차원에서 특별재정에 의한 보상을 의미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년 이상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27 ANC, Base Document of the RDP (<http://www.anc.org.za>)

28 Priscilla B. Hayner, "Reparations for State Crimes", *Unspeakable Truths*,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pp 163-167.

- 개인적 보상의 규모는 인권침해에 의한 고통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즉 희생자들이 합리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후손이나 희생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전제가 되는 것은 희생자들이 동의해야만 한다.

- 만약 사망한 희생자의 경우에는 보상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관계자나 후손에게 적용된다.

- 금전적 보상규모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① ease of access to services and facilities ②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1일 생활비용의 산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시킨다. ▶ 관계자나 후손의 수 ▶ 도시와 시골 등 생활비용을 차이 ▶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규모인 17000랜드에서 23000랜드 정도를 6년 동안 ▶ 대통령과 국회가 이 제안을 결정하여야

□ 위원회는 약 22000명의 희생자들에게 매년 17000랜드에서 22000랜드를 6년 동안 보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총 3billion 랜드가 소요될 것이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희생자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임시로 2000R - 6000R(\$330-1000)를 상징적으로 지불하였다.

□ 남아공은 “보상세금 및 부유세금”으로 “대통령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으로 경제적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 화해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권고안도 제출하였다. 위원회가 제안한 경제적 보상정책의 내용은 6년 동안 매년 일정한 돈을 보상하는 것인데, 1차 년도에는 100million R(\$16million) 2차 년도에는 200 million R(\$33 million), 그리고 3차 년도에는 300 million R(\$45million)을 배정하였다. 25,000명 이상의 희생자들에게 들어가는 총비용은 \$600million이다.²⁹⁾

□ 위원회는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권고하였다. ▷부유세 조치 ▷1회에 한하여 법인 및 개인의 수입에 대한 일괄공제 과세 조치 ▷주식거래 총액의 1%를 기부하도록 하는 조치 ▷기업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제안되는 날까지 연장하여 소급 부과하는 조치 ▷1990년 이후 공무원들의 명예퇴직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 등이었다.

(3) 법적·의학적·심리적으로 복권시키는 차원의 보상정책(rehabilitation)

① 건강치료(health care)

-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임시로 보상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제도개혁의 차원에서는 교도소의 범죄자들이 정당한 의료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만약 희생자들이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① 사회적 기관(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민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희생자들에게 사회적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③관계자나 후손들 역시 지원 받을 수 있다.
-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가해자들과 그들의 가족 역시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폭력적인 과거와는 달리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개인적으로나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29 Priscilla B. Hayner, "Reparations for State Crimes", *Unspeakable Truths*,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pp 163-167.

② 정신건강 치료(mental health care)

- 이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요한 부분이다. 프로그램 자체가 발전적 프로젝트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 공동체 내에 지원그룹을 형성하는 것이다. 피해자나 희생자의 후손들은 생활에 필요한 기술훈련의 문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그러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 정신건강과 관련된 치료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치료과정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 공동체 스스로 상담원을 배치하여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법적 명예회복

- 사망증명서 발급
- 재발굴(exhumation), 재매장 그리고 장례식
- 비석이나 기념비 건립
- 사망선포
- 범죄기록의 삭제
- 폭력과 연관되는 법적인 문제의 해결: 연좌제의 폐지

(4) 국가폭력의 인정과 예방 차원의 보상정책(satisfaction and guarantees)

- 강력한 인권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의 각종 기록물들을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의 발생률을 낮추거나 민간부문·공공부문에 널리 퍼져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한다.

- 인권보호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개혁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정부 부처 내에 인권 사무국을 설치하는 문제와 독립적인 감시인들, 특히 공공감시자(public protector)의 예산을 늘려 주어야 한다.

-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회의 보고서가 인권교육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종족과 모든 언어로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① 자료의 보존과 공개를 통한 기억보존 차원의 보상

- 위원회의 각종 기록들이 보존되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위원회의 모든 기록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 비밀 유지 등의 문제를 존중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공문서 기록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모든 국민들이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희생자들은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막론하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서의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의 공문서 보관소에 적절한 법적 권한을 주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의 법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록 보관소를 대통령이나 부통령 소속기관으로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국가의 인권침해 기관 개혁 차원의 보상

- TRC의 업무 중 하나는 제도적, 법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다.
- 국가기관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독립 감시기구(독립 민원조사위원회 등)에 부여하여야 한다. 교도소, 법률과 사법기관, 보안부대 등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각 기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일상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나 교도소의 경우에는 관료 및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시키고, 죄수들에 재활정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 보안부대, 남아공국가방위군, 그리고 경찰청 내에 존재하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과거 국가 정보기관의 자료에 잘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독립된 연구자들이 남아공국가방위군이나 보안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석작업이 완료되면, 각종의 문서들을 정부문서기록 관련법률에 따라 국립 문서보관소로 이관해야 한다.
- 이러한 제안은 국가 차원에서 혹은 시민사회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도적 개혁의 영역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안은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제출될 것이다.

③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상징적 보상

- 만약 개인적인 차원에서 TRC의 결정에 동의한다면, 이 보상정책은 개인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보상이나 국가적 보상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보상은 희생자나 생존자들의 '존엄성 회복'(restoring dignity)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 위원회는 법적인 차원이나 정부 차원의 문화적 추모제의 공식화를 제안하였다. 상징적 보상은 과거의 고통과 승리를 공동체 차원에서 기억하게 되는 주요 보상정책이다.

- 이것은 기념관의 건립, 기념비의 건립 등과 마찬가지로 국경일의 제정도 포함하고 있다.

④ 공동체 측면에서의 상징적 보상

- 거리와 시설물에 대한 재명명
- 기념관과 박물관 건립
- 문화적 기념행사 추진

⑤ 국가적 측면에서의 상징적 보상

- 공공시설에 대한 재명명
-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념관과 박물관 건립
- 기억과 화해의 날 지정

4) 보상정책의 집행에 대한 대안

보상정책은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보상정책의 권고안이 권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상정책의 집행의 어려움은 공정한 보상 프로그램의 수립이 어렵고 또한 그 프로그램의 집행 자체가 개별적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³⁰⁾

□ 남아공 정부는 최종 보고서가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단지 희생자로만 간주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보고서에서 권고한 보상정책에 대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긴급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은 보상정책 권고안의 집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하는 등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왜냐하면 ANC정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보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보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상정책의 집행 여부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다.³¹⁾

30 Priscilla B. Hayner, "Reparations for State Crimes", *Unspeakable Truths*,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pp 163-167.

31 Simon Kimani, 'Report of The National Strategy on Reparations', Workshop held at the Parktonian Hotel, Johannesburg, 31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im1.htm>)

4. 결론

□ 남아공에서 화해를 달성하는 문제는 인종차별주의 체제에서 보편화되어 왔던 경제적 차별과 착취를 근절시키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남아공 정부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사회적으로 분배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적 자원을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체의 발전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³²⁾ 구체적으로는 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하였듯이, 유리한 사람들과 불리한 사람들 사이의 참을 수 없는 차별을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교육개혁과 주택제공, 깨끗한 물의 공급, 건강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시급히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 Eboe Hutchful교수는 화해와 신자유주의 정책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시민권을 심각하게 침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인종주의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는 화해가 경제적, 정치적, 인간적 능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³³⁾는 것이다. 즉 “민주정부는 전략적 영역, 예를 들면 국유화 혹은 공공영역을 확장하거나 사적영역과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남아공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³⁴⁾

32 Graeme Simpson, 'Rebuilding Fractured Societies: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the changing nature of violence-Some self-critical insights from post-apartheid South Africa', Paper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00(<http://www.wits.ac.za/csvr/papers/papundp.htm>)

33 Graeme Simpson, 'Rebuilding Fractured Societies: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the changing nature of violence-Some self-critical insights from post-apartheid South Africa', Paper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00(<http://www.wits.ac.za/csvr/papers/papundp.htm>)

34 RDP, section 4.2.3 and 4.2.5.1

□ 화해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은 ①폭력 및 폭력위협의 종식 ②인정 및 보상 ③세력화 ④구조적 불평등 및 물질적 욕구의 해소 ⑤시간 등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화해를 위해서는 구조적, 제도적(법, 군대, 정치 분야 등) 분야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 진실의 규명, 인권교육, 구체적인 인권 기준의 설치, 사회적인 인권문화의 배양 등도 포함된다.³⁵⁾

□ RDP를 통한 민주화는 새로운 민주적 질서, 즉 재건과 발전을 연계시키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리 확대, 의미있는 교육의 강화, 참여적이고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정착 등이 필요한 것이다. 즉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을 지는 정부의 수립,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부문운동의 활성화, NGO기능의 확대, 시민권력의 강화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안군과 경찰 및 교도행정을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³⁶⁾

35 Priscilla B. Hayner, "An Eye to the Future -Reconciliation and Reforms-", Unspeakable Truths, Routed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pp 163-167.

36 "RDP 5.2.1~5.2.10, 5.6.1, 5.8.1~5.8.8", <http://www.polity.org.za/govdocs/rdp.htm>

Amnesty hearings & Decisions(<http://www.truth.org.za>)

Charles Villa-Vicencio & Wilhelm Verwoerd, "Constructing a Report Writing up the Truth", Robert I. Rotberg & Dennis Thomson, *Truth V. Justice*, Princeton, Pribston Univ., 2000.

Charles Villa-Vicencio and Wilhelm Verwoerd는 *Looking Back Reaching Forward*, Univ. Cape Town Press, 2000.

Du Toit(ed), *Confession and Reconciliation*, Pretoria, Research Institute for Theology and Religion, 1998.

G. Simpson & P. van Zuy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Centre for the Study of Violence and Reconciliation*, johannesburg: South Africa, 1995.

George Bizos, *No One to Blame? In pursuit of Justice in South Africa*, Cape Town, David Philip & Mayibuye Books, 1998.

Graeme Simpson, "A Culture of Impunity", *The Johannesburg Star*, 24 January, 1997.

Henry J. Steiner(ed), *Truth Commissions, A Comparative Assessment: World Peace Foundation Report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7.

James Cochrane, John de Gruchy and Stephen Martin(ed), *Facing the Truth-South African faith Communities an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David philip publisher, Oheio Press, 1999

James L. Gibson & Amanda Gouws, "Truth and Reconciliation in South Africa: Attributions of Blame and the Struggle over Aparthei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3, sep. 1999.

Paul van Zyl, "Dilemmas of Transitional justice: The Case of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2, no. 2, spring 1999.

TRC, TRC Report, 1998.